



병무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무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관련 변경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병역법시행령 제120조

나.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개정 '23.8.14. 병무청훈령 제1977호) 제20조

2.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무사관후보생이 아래와 같은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상변동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가.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나.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다.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라.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3. 신상변동 사항 중 법무사관후보생 신분포기 기간이 "관련근거 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관후보생 신분포기 기간 변경

- (종전)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 전날까지 → (변경) 변호사시험일 전날까지 끝.

병 무 청 장



수신자 전국 24개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사관후보생 담당)

주무관 박길표 행정사무관 김응세 현역입영과 과전결 2023. 8. 18.
장 오재덕

협조자

시행 현역입영과-5040 (2023. 8. 22.)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현역입영과 (둔산동) / <http://www.mma.go.kr>

전화번호 042-481-2737 팩스번호 042-481-2730 / mayyy@korea.kr / 비공개(2)